

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1. 13.

담양군의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
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·감독하게 함으로써,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차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의2 신설)

※ 주민참여감독자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의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

나.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및 운영에 관한사항
(안 제12조제2항, 제3항 신설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11. 13. ~ 11. 18.(5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수”를 “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, “의 하여”를 “의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”를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건설기술진흥법」”을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법률 시행령 제92조의7(제1항제4호는 제외) 준용한다”를 “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“5인 안 10인”을 “5명 이상 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계약담당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의 해촉은 영 제106조2를 따른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임기 등) ① 군수는 법 제16조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영 제5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

가 위촉한다.

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.

④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58조에 따른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”을 “(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감독범위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영 제61조를 따른다.

③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, 감독사항, 감독조서 제출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, 제4항 및 영 제59조,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담양군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,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	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달 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--- ----- 의하여 ---- ----- ----- -----

다.

1. · 2. (생략)
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
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
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
가 추천하는 자

4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의한
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
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법
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
격 취득자

5. 삭제

6. (생략)

③ (생략)

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~ ③
(생략)

④ 위원회 제척·기피·회피에
대하여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의
7(제1항제4호는 제외) 준용한
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
인 안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다
만,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
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

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「비영리민간단체
지원법」 제2조-----

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영 제107조제6항에 따
른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5
명 이상 10명 -----

수 있다.

③ ~ ⑦ (생략)

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,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안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3.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

4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<신설>

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
----- 계약담당공무원 -----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의 해촉은 영 제106조2를 따른다.

제11조의2(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임기 등) ① 군수는 법 제16조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

제12조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) (생략) <신설> <신설>	한다.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영 제5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. ④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58조에 따른다. 제12조(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감독범위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영 제61조를 따른다.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, 감독사항, 감독조서 제출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--	---